

의안번호	제2811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25. (제295회)

의결사항	원안가결
------	------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7. 1.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1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1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자연휴양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객실 운영 및 관리자 예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예비객실 운영 규정 신설(안 제6조2)

- 예약사고, 고장,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비객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나. 관리자 예약 규정 신설(안 제6조3)

- 관리자 권한 근거 및 통제방안 마련

다.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추가(별표 2)

-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

·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반영(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)

[복지지원과-19218호(2024. 5. 10.)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별표 2	<input type="checkbox"/> [별표 2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(제8조 관련)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	<input type="checkbox"/> [별표 2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기준에 수급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반영하고자 함.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

(1) 고성군 공고 제2024-752호 {2024. 4. 22. ~ 2024. 5. 13.(20일간)}

(2) 고성군 공고 제2024-939호 {2024. 5. 23. ~ 2024. 6. 13.(21일간) *}

*재입법 예고: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으로 재입법 예고함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예비객실 운영)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
2.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
3. 문화행사,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(관리자 예약) ① 제6조의2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관리자 예약의 사유, 사용자, 예약 및 사용 일자,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

2.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·해제

3.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6조의2(예비객실 운영) ①</u>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</u> 2. <u>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</u> 3. <u>문화행사,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 4. <u>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</u> <p>② <u>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6조의3(관리자 예약) ①</u> 제6조의2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</u></p>

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관리자 예약의 사유, 사용자, 예약 및 사용 일자,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

2.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·해제

3.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

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(제8조 관련)

1.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

-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
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(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)

감면대상	대상기간	비수기 (성수기를 제외한 기간) 및 주중	성수기 (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) 및 주말	비고
1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	20%	-	
2. 고성군민		20%	20%	
3.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		20%	-	
4. 국가보훈대상자		20%	-	
<p>※ 비 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성수기 및 주말“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,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, “비수기 주중“이란 “성수기 및 주말“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. -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. -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. -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 -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. 				

-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(1명)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국가보훈대상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(제8조 관련)

1.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

-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
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(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)

감면대상	대상기간	비수기 (성수기를 제외한 기간) 및 주중	성수기 (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) 및 주말	비고
1. 고성군민		20%	20%	
2. 다자녀 가정		20%	-	
3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	20%	-	
4. 국가보훈대상자		20%	-	
5. 수급자		20%	-	
6. 한부모가족		20%	-	
7. 다문화가족		20%	-	
<p>※ 비 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성수기 및 주말“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,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, “비수기 주중“이란 “성수기 및 주말“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. -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. -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. 				

-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
-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.
- 국가보훈대상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수급자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.
- 한부모가족이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.
- 다문화가족이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.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완하는 선언적으로
규정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생략함.

작성자: 녹지공원과장 전 인 관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[본조신설 2015. 1. 20.][제목개정 2018. 2. 21.]